과태료 납부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 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고, 만약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하여 그에 따른 법원의 재판 후 검사가 집행하는 것으로 절차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 징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 체납시 제재 조치는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할 때 구체적인 불복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자 1
1. 과태료 개관 4
1.1. 과태료 개관 4
1.1.1. 과태료의 개념 4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5
1.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5
2.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10
2.1.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10
2.1.1.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10
2.2.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11
2.2.1. 법인 및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11
2.2.2.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12
2.2.3.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 12
3. 과태료의 부과 · 징수 14
3.1. 과태료의 부과 · 징수 14
3.1.1. 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14
3.1.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15
3.1.3.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7
3.1.4. 과태료의 부과 18
3.1.5. 과태료 부과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21
3.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22
3.2.1.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결손처분 등 22
3.2.2. 관허사업의 제한 24
3.2.3. 신용정보의 제공 25
3.2.4.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27
3.2.5.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30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33
4.1.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33
4.1.1.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33
4.2. 과태료 재판 및 집행 34
4.2.1.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 34
4.2.2. 약식재판과 이의절차 37
4.2.3. 과태료 재판의 집행 38

1. 과태료 개관

1.1. 과태료 개관

1.1.1. 과태료의 개념

과태료

과태료의 개념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
>
> ·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게 됩니다.
>
>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별하여 알아둘 개념

▪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 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 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및 제165조).

▪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참조).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 과태료 부과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질서위반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절차적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본문).

▪ 구체적인 예

▸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차 또는 노면전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그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해 입증된 경우 차량의 소유주 등은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6).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제1항제1호).

※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1.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등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① 사법(私法)상의 과태료, ② 소송법상의 과태료, ③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 「민법」, 「상법」 등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의 개념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

▪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사람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 ※ 종전에는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은 질서위반행위의 주체로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고, 실무상 이러한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체의 책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담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적어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어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갖고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은 당사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
>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39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등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즉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2008. 6. 22)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법률 제8725호, 2007.12.21.) 제4항]. 따라서 2008. 6. 22. 이전에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그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행위 시의 법률’이 아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①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②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이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

-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이 **면제**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3항).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제1항).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국적과 관계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

▪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과태료의 산정

▸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과태료의 부과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 과태료의 징수유예

▹ 행정청은 당사자가 수급권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사망 및 합병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 과태료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 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

▪ 약식재판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 과태료 재판의 집행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및 제42조제3항).

2.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2.1.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2.1.1.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본문).

> ※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원적으로 규율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① 사법(私法)상의 과태료, ② 소송법상의 과태료, ③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 「민법」, 「상법」 등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질서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즉,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4세 미만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면제

▪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면

▪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

> ※ '심신장애'라 함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와 같은 의미로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한 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 다만,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3항).

2.2.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2.2.1. 법인 및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증명이 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즉, 위반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 등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 그리고 심신장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는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2항).

2.2.2.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2항).

▪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은 때에는 그 신분에 따른 과태료 감경 등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3항).

> ※ 이때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 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 인정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합니다.

2.2.3.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

> **< 구체적 사례 >**
>
> Q.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수원 부근을 지나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140km/h로 주행하였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 40km/h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7만원이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9만원이라면 운전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건가요?
>
> A. 버스전용차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하나의 운전행위가 ① 제한속도 위반과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는 2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동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인 9만원만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 본문).

< 구체적 사례 >

Q.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① 수원 부근에서는 시속 140km/h로 주행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고, ② 평택 부근에서는 제한속도는 지켰지만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 40km/h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7만원이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9만원이라면 운전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건가요?

A. 수원 부근에 과속운전을 한 행위(제한속도 위반)와 평택 부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한 행위(버스전용차로 위반)는 각각 별개의 행위입니다. 이는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해진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한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7만원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9만원이 각각 부과되어, 총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적용

▪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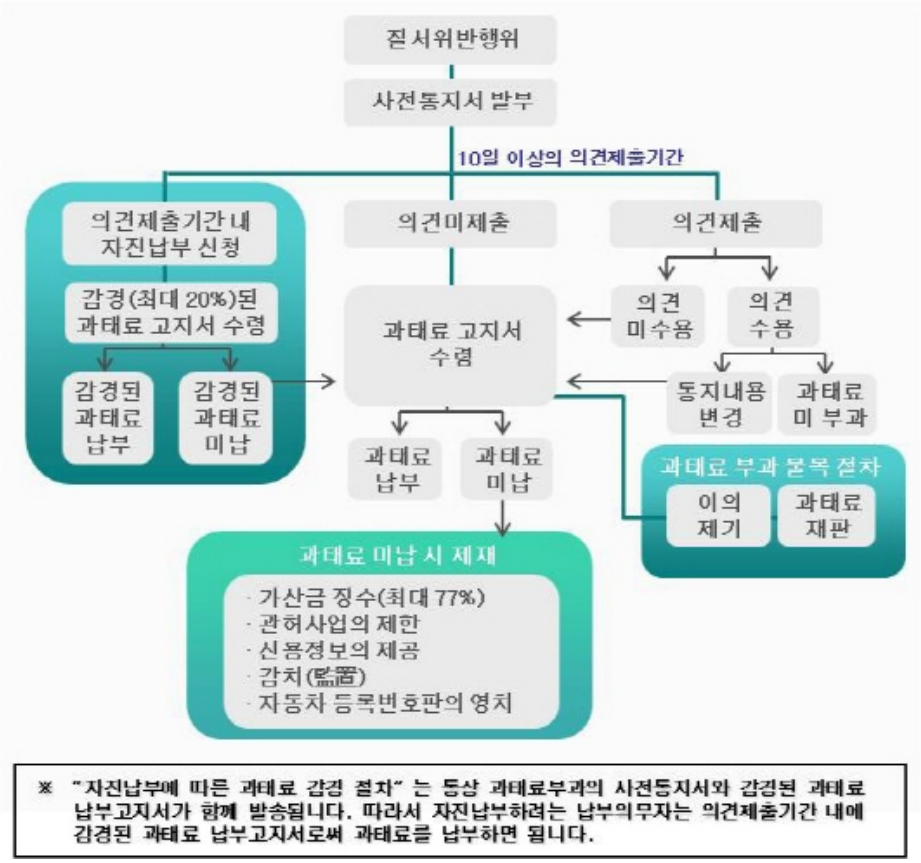
※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의 부과 · 징수

3.1. 과태료의 부과 · 징수

3.1.1. 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과태료 부과 절차 개관



과태료의 산정

과태료 산정

▪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조치 등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조치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1항).

▹ 위와 같은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 포함), ③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이때 행정청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조치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5항).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검사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4항).

▪ 검사를 하려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검사 기간 및 장소, ③ 검사 대상 및 이유, ④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3항 단서).

▪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5항).

> ※ 질서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행정청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자료제공의 요청

▪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

3.1.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고용주 등을 포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와 같은 사전통지에 대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후단).

의견제출

서면 또는 구두(口頭)에 의한 의견제출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행정청은 당사자의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당사자 의견 수용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는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나, 감경여부 및 감경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사전통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제3조제1항).

> **<기재예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참조).

▪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의 사유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 구체적 사례 >**
>
> Q.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자진납부를 하면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 A.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따른 감경에 더하여 거듭하여 감경이 가능하므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거듭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유로 50%의 감경을 받고, 그에 더하여 자진납부를 이유로 20%의 감경을 중복하여 받으면, 100만원인 과태료는 50% 감경으로 50만원이 되며, 자진납부로 20%의 중복 감경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감액된 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이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완납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3.1.3.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정식 부과 이전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참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례 (1) >

Q.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중복감경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경감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106쪽).

< 구체적 사례 (2) >

Q.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자진납부를 한 이후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이미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109쪽).

< 구체적 사례 (3) >

Q.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50%의 과태료 감경을 받았는데, 만약 자진납부를 하면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따른 감경에 더하여 거듭하여 감경이 가능하므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거듭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유로 50%의 감경을 받고, 그에 더하여 자진납부를 이유로 20%의 감경을 중복하여 받으면, 100만원인 과태료는 50% 감경으로 50만원이 되며, 자진납부로 20%의 중복 감경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감액된 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이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완납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118쪽)

3.1.4.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 부과 고지서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때 그 서면(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 √ 감치(監置)(「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로서 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 이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및 제3항].

과태료의 납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 당사자는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과태료의 징수유예

▪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행정청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단서).

▪ 행정청은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을 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징수유예

▪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징수유예

▪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

징수유예의 취소

▪ 행정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5항 전단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경매가 시작된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위의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5항 후단).

▪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제3항 본문).

※ 다만,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제3항 단서).

사망 및 합병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과태료의 집행

▪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1항).

▪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 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4항).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의 집행

▪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2항).

▪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 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4항).

3.1.5. 과태료 부과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의 소멸시효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 ※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① 납부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함)로 인해 중단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

소멸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행정청이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세징수법」 제25조) 또는 채권자대위소송(「민법」 제404조)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

※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4항).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 ※ 제척기간(除斥期間)이란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

▪ 행정청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 또는 약식재판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항).

3.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3.2.1.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결손처분 등

가산금의 징수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중가산금의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구체적 사례 >

Q. 주차위반으로 인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얼마의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되는 건가요?

A.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자는 최고 70,000원(40,000원 + 1,200원 + 28,8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 40,000원

· 가산금 40,000원 × 3% = 1,200원

· 중가산금 40,000원 × 1.2% = 480원.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 28,800원(480원 ×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대 납부금액 = 40,000원 + 1,200원 + 28,800원 = 70,000원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150쪽 참조)

과태료의 체납처분

과태료의 체납처분

▪ 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

1.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청은 위 2.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2항).

※결손처분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 의무를 없애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법령용어검색 >

3.2.2. 관허사업의 제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모든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상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한정하여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므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3개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의 독촉고지서를 여러 번 받은 경우에도 1회 체납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조).

관허사업제한의 철회

▪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한 후 해당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3항).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다른 행정청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

▪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 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관청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보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관허사업제한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다른 행정청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의 철회

▪ 행정청은 사업의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후 해당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3항).

※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3.2.3. 신용정보의 제공

신용정보의 제공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4.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신용정보 제공의 제한

▪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므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3개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정보제공의 절차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 ※ 신용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3.2.4.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과태료 체납의 제재수단으로서 감치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감치제도

▪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치제도의 정의

▪ 감치(監置)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가 아닙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52쪽).

▪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 ※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므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3개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참조).

검사에 대한 행정청의 감치 신청

감치 신청

▪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가 감치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2항).

법원에 대한 검사의 감치 청구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 행정청으로부터 감치 대상 체납자의 감치 신청을 받은 검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체납자의 감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감치의 재판 등

청구각하의 결정

▪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흠을 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법원의 각하 결정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검사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3항).

재판기일의 지정 등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검사의 감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

법원의 감치결정 및 즉시항고

▪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법원은 재판을 통해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과태료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3항).

- 이때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

-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원의 기각결정 및 즉시항고

- 법원은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②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③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검사는 법원의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5항).

  - 이때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라 감치시설에 유치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는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 석방되도록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

>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는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 법원의 감치결정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4항).

3.2.5.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대상 및 요건

▪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과태료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부과된 과태료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부과되는 과태료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과태료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주·정차금지 위반 또는 갓길통행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어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제9호·제10호, 제84조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제12호·제13호·제13호의2·제15호의3·제15호의4·제15호의5·제18호의3·제19호 및 제84조제5항제2호·제2호의2·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행정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5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 행정청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4항 본문).

※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4항 단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절차

▪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5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이 경우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5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5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 영치일시
-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

▪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위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때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제4항).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환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

▪ 이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본문).

▹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단서).

>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로서 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및 제3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본문).

▪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단서).

>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로서 규정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및 제3항].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4.1.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4.1.1.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제기의 의의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의 효과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의 통보 등

행정청의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

▹ 다만, 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②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단서).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법원에 대한 통보 방법

▪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2항).

당사자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

▪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

▹ 위와 같은 행정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 Q.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의 구체적인 예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A.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는 ①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대해 행정청이 직접 각하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128-129쪽)

4.2. 과태료 재판 및 집행

4.2.1.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

과태료 재판의 의의 및 절차 개관

과태료 재판의 절차

▪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및 제25조).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과태료 사건의 관할

관할 법원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6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등

▪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제1항).

▹ 당사자 또는 검사는 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제2항).

※ 그 밖의 관할법원에 관한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과태료 재판의 대리인

과태료 재판의 대리인

▪ 과태료 재판의 당사자는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시킬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 단서).

▪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禁)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

과태료 재판의 대리권의 증명

▪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제2항).

법관 및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법관 및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 법관 및 법원직원(이하 '법관'이라 함)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과태료 재판에 준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1조 이하).

▪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준용하므로, 이하의 법관에 대한 설명은 법원직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50조).

> ※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回避)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한 직무의 집행에서 그 법관을 배제하여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 · 제척(除斥):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민사소송법」 제41조)에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
>
> · 기피(忌避): 법관에게 제척원인이 있을 때 또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에 의해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
> · 회피(回避):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

법관의 제척(除斥)

▪ 법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태료 재판에서 제척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41조).

▹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

법관의 기피(忌避)

▪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43조제1항).

▹ 그러나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43조제2항).

법관의 회피(回避)

▪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49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법원의 심문 등

▪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 ※ 그 밖에 기일·기간 및 소명방법에 관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65조부터 제173조까지 및 제29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등

▪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2조제1항).

▪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2조제2항).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3조).

조서의 작성

▪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5조).

과태료 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

▪ 과태료 재판에 따른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제1항).

▪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에 따라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제2항).

과태료 재판에 대한 항고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제1항). 따라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과태료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때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제2항).

▪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과태료 재판의 결정 고지가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및 「민사소송법」 제444조제1항).

항고법원의 재판

▪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도 결정으로써 하며,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9조).

> ※ 항고의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과태료 재판 비용

과태료 재판 비용 부담의 원칙

▪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제1항).

항고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前審)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제2항).

> ※ 그 밖의 재판비용에 관한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4.2.2. 약식재판과 이의절차

약식재판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의 약식재판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審問) 없이 약식(略式)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이의신청

이의신청

▪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9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4항).

이의신청의 취하

▪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심문기일에는 구두로 가능)하여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7조제1항·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의 각하(却下)

▪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제1항).

▪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제2항).

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의 확정

▪ 약식재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9조).

-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8조)이 확정된 때
-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 재판절차로의 이행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 재판절차로의 이행

▪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고, 심문(審問)을 거쳐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4.2.3.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의 집행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합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1항).

▪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2항 본문).

-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2항 단서).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등

▪ 가산금의 징수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

▪ 중가산금의 징수

▹ 행정청은 당사자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 과태료의 체납처분

▹ 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 과태료의 결손처분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당사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1항).

▪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 당사자의 사망 및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대한 검사의 통보 의무

▪ 검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4항).

※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대한 검사의 통보의무는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원행정청이 과태료 집행 여부를 알 수 없어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새로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보제도를 통하여 향후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17-218쪽).

※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따른 검사의 통보의무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2항).

▹ 검사가 직접 집행한 과태료는 재판비용 및 집행비용을 국고가 부담하게 되므로, 종전과 같이 '국고'에 귀속됩니다.